

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·재료·용기 출고 실적서

※ 폐기물부담금시스템(<http://www.budangum.or.kr>)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 (앞쪽)

제출인	상 호	전화번호	법인등록번호
	주 소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대표자(개인사업자) 생년월일	

폐기물 부담금 산출 명세	① 제품명	② 수량	출고단위 (kg,L,개,원)	③ 폐기물부담금 금액	④ 부담금 납부금액(원) (② × ③)	⑤ 연간 총매출액(천원)

플라스틱제품의 경우	⑥ 감면조건		⑦ 감면액(원)	⑧ 감면 후 부담금 납부금액(원) (④ - ⑦)
	[]10억원	[]10,000kg		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·재료·용기 출고 실적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제출인

한국환경공단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. 결산보고서 등 제품·재료·용기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(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요령

- ①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명을 적되,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②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의 수량을 적습니다.
- ③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한 부담금 금액을 적습니다.
- ④ 부담금 납부금액은 대상 제품의 수량에 부담금 금액을 곱한 액수를 적습니다.
- ⑤ 연간 총매출액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만 적습니다.
- ⑥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만 제조업자가 원하는 감면조건을 적습니다.
- ⑦ "⑥번"에서 선택한 감면조건에 따라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감면액을 적습니다.
- ⑧ "④번"의 부담금 납부금액에서 "⑦번"의 감면액을 감하여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부담금 금액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